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어선조업안전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81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 범위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략) <u><신설></u>	5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u>어선안전감독관</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 1. ~ 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u>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u>

2. 검토의견

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기존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¹⁾을 받도록 하였는데, 「선원법」은 선내 안전·보건 기준 자체가 불비²⁾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육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위주로 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어선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³⁾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의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8호, 2024. 1. 3. 공포, 2025. 1. 3. 시행)

1)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규정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p.1)

구 분	관련 법률	소관부처	비 고
20톤 이상	선원법	해양수산부	상선 및 20톤 이상 어선에 한하여 적용되나 선내 안전·보건 기준 불비
20톤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육상 사업장 위주로 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선원에 대한 기준은 미비

2) 「선원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 고시는 불비되어 있었음.

3) 김지환, 「바다위의 김용균 - (하) 선원 목숨 달렸는데...해수부 안전기준 '미적', 노동부 법 개정 '실기」, 경향신문, 2020. 5. 6.

(이하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⁴⁾하였음.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기준 및 체계 비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前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後	
선원법 (해양수산부)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실제로는 상선원 위주 관리)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모든 어선원 * 모든 어선을 해양수산부가 관할 (5명 미만 어선은 제외되나, 이는 개정 前과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부)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실제로는 육상사업장 위주 관리)		

* 자료: 해양수산부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무·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선안전조업법」상 범죄 개관>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52조 제1항	(제1호)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52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의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어업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53조	(제1호)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어선원의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이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등의 요양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호) 해양수산부장관의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5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단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해 중지 명령 또는 어선원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호) 법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	(제1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제2호)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제3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제4호) 법 위반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제6호)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어선원안전감독관 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7조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 제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조업과 관련된 벌칙규정이므로 제56조는 어선원안전감독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음.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적절성

□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44조⁵⁾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임.

□ 개정안은 이러한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무와의 부합성, 수사의 효율성, 유사 사안에 대한 수사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으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45조⁶⁾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고 어선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이하 “행정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5)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①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어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어선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까지 가진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및 전문성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행정조사와 수사의 연계를 통해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업무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⁷⁾)에게

7)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노동관계분야 법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두 분야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을 각 분야별로 별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실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지칭함.

-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육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상 범죄에 대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사 사안에 대한 수사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현행법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선원법」 적용여부에 따라 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⁸⁾함으로써 수사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선원”의 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일률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현행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선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만이 「선원법」을 적용받는바, 20톤 미만의 어선은 근로감독관이,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근로감독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생략)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선원 관련 사법경찰 직무수행 감독관>

구 분	20톤 미만 어선	20톤 이상 어선
어선원 근로조건 관련 (「근로기준법」상 범죄)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법」상 범죄 포함)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어선안전조업법」상 범죄)	어선원안전감독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범위를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에 규정된 범죄는 조업한계선 이탈 등 조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과 무관한 “조업”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범죄로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어선안전감독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44조에 따르면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어선안전감독관”을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⁹⁾)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 9)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